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곽규택 · 조승환 · 박지원
김용태 · 유상범 · 신성범
김상훈 · 강대식 · 배준영
강승규 · 조지연 · 강명구
서천호 · 최은석 · 서범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,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,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·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

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86조제4항).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4항 중 “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·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~ ③ (생 략)	제86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<u>도로망의 정비</u> <u>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</u> <u>고 인정하면</u>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 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 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 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국</u> <u>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</u> <u>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2. 「 <u>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</u> <u>에 관한 특별법</u> 」 제2조제12 <u>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</u> <u>도로의 건설·관리를 위하여</u> <u>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</u> <u>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